

<의안번호 제2008 - 1호>

〔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8. 01. 1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8. 01. 16.

2. 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도로명시설 설치 후 도로명의 변경 요건을 정함(안 제3조).
- 나. 도로명의 변경신청 및 변경절차를 정함(안 제4조).
- 다.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내용 및 방법을 정함(안 제5조).
- 라.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에 따른 규격을 정함(안 제6조).
- 마. 건물번호판 재교부시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함(안 제8조).
- 바.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을 정함(안 제9조).

- 사.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을 의무화 함(안 제11조).
- 아. 도로명의 부여사유를 정리 시스템에 구축토록 함(안 제14조).
- 자. 도로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차.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를 정함(안 제19조).
- 카. 도로명주소의 사용 및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의무를 부여함(안 제23조).
- 타. 거창군새주소위원회의 구성·심의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 제17조, 제21조, 제26조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2007.8.9).

나. 예산조치 : 2007년도 기정예산에 반영(340,000천원)

다. 입법예고(2007. 9. 6 ~ 9. 27) 결과 : 의견없음

라. 규제심사(2007. 12. 4) 결과 : 규제신설 1건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2006년 10월 4일 제정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의 입법취지가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이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고, 이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에 맞추어

-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8월 9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고 이 조례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에 상정한 것임.
-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안 제3조에서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의 자가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의 변경요건 기간을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도로명 변경 요건 기간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부여된 도로명을 자주 변경하게 되면, 이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주소표시의 변경과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에 소모되는 시간과 소요사업 예산 등 제반문제가 초래하게 되어 빈번한 변경은 행정·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조례안 제9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창군 새주소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과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 (도로명부여 등) ①시장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2. 도로구간의 설정
3. 도로명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4. 건물번호의 부여방법의 결정 및 부여
5.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대장의 작성 및 비치
6. 도로명판의 제작·설치
7.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8. 건물번호 부여신청 등

9. 기본도의 작성

10. 그 밖에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전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기본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원인자 부담) ①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새로운 도로명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준공허가 전에 새로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시장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명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①시장등은 도로명사업이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지역에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등은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 등을 일제 조사하여 망실 및 훼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도로명시설의 광고) ①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에 장애가 없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업자의 선정과 광고방법 및 광고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비 수입은 도로명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 ①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해당 건물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시설의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②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해당시장등에게 재교부 받아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 등이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또는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교부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관한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17조 (도로명사업 지원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손해배상공제가입·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다.

제22조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와 공공기관에 도로명 안내지도를 비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를 용도별·규격별로 제작·보급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의 제공 등 지원
4. 버스·지하철 정류장, 광장, 지하도, 시장 등 공공시설의 위치안내판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위치표시 지원
5. 관광호텔 지도, 교통 지도, 렌터카 지도, 관광안내 지도, 백화점 지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등 각종 위치안내 지도에 도로명안내지도 표기지원
6. 그 밖에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도로구간의 설정)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로구간을 설정하여야 하는 도로는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노(路)·길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로별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등이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로 :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중 도로의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2. 노(路) :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중 도로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도로
3. 길 : 대로와 노 외의 도로

③도로구간은 도로의 폭·방향·교통흐름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설정하되 도로구간의 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도로구간은 강·하천 등의 지형·지물, 시설물, 행정구역(시·군·구와 읍·면을 말한다)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도로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도로구간의 설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을 설정하기 위한 도로망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 (도로명의 부여 등) ①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장등은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성, 지역주민의 의견 및 지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도지사,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장등 사이 또는 시·도지사 사이에 동일한 도로명을 부여하거나 동일한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도로명을 도로명판에 표기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 3년 이상의 기간으로서 시·군·구 조례(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가 이미 부여된 도로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자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등) ①시장등은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시설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2 이상의 관련된 건축물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마다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중 동(棟)번호를 표기한다.

③시장등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명시설이 못쓰게 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원인조사 및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운전자에 대한 도로안내를 위하여 「도로법」 등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표지를 제외한다)의 종류·규격·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⑤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의 규격·색상·부착위치를 행정자

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와 다르게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와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시켜 제작·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작·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유지관리의 위탁 등) 시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1조 (도로명주소의 고시) ①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거나 고시하는 때에는 고지 또는 고시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전의 주소
2. 새로 부여되거나 변경되는 도로명주소
3. 주소변경의 날짜와 그 사유
4. 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등은 도로명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보 등을 이용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고지 또는 고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26조 (시·군·구새주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법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 도로명주소의 고시 및 안내도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등 소속하에 시·군·구새주소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은 도로명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관계공무원과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시·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시·군·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 중 "중앙위원회"는 "시·군·구위원회"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장등"으로 본다.

⑦시·군·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